

의안번호	40
발의일자	2022. 8. 12.
회부일자	2022. 8. 18.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2. 8. 25. (수)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 수 산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채 식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신호광 의원 외 15명

2. 제안이유

-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등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농어업 전기재해 관련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과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어업 발전 기본법」
- 「전기안전관리법」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 예고기간 : 2022. 8. 18. ~ 8. 23.(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65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

입 법 사 례

조 례 명	비 고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0. 제정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021.05.20. 제정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021.05.20. 제정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2022.03.04. 제정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실태조사 등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각호에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전점검과 수리 등 예방사업과, 피해복구 지원 사업이 핵심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례 제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재해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사를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규정함

⇒ 교육의 핵심내용으로는 예방 및 안전 교육과,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 교육으로 나누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교육을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다. 종합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전기재해로부터 농어민들을 보호하여 더욱 안전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동·식물시설, 농업기계, 어선의 화재는 각각 881건, 177건, 73건으로 나타남. 이 중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는 각각 410건(46.5%), 49건(27.6%), 33건(45.2%)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농어업은 산업 특성상 수리시설, 내연기관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특히 전기재해에 취약하며, 재해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여 재해 발생 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전기재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책 지원을 통한 농어업 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이는 신규농어업인, 특히 청년들에 대한 농어업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가. 목 적

- 축사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및 전기적 요인의 화재발생 억제로 가축폐사 및 대형 재산피해 방지
- 해마다 지속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990	247,500	37,125	86,625	123,750	

- 지원단가
 - 자동소화장치 : 250천원/개
 - 화재예방콘센트(멀티탭) : 33천원/개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및 화재예방콘센트(멀티탭) 지원

라. 세부실시요령

- 무허가 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동소화장치는 배전반, 분전반 등에서 일정 온도 또는 연기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되는 장치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성능을 인증 받아 사후관리(A/S)가 용이한 제품을 농가 자율구입
- 화재예방콘센트(멀티탭)는 소화물질내장 등으로 화재예방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농가 자율구입

- 시군에서 일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사업대상 농가가 참석하여 제품 설명회 등을 통한 협의 결과에 따라 제품 선택
- 지원품목별 지원단가가 상이하므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군여건에 맞게 사업량 확대 가능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시군은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시군에서 사업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하여 사업 시행
- 시군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본 사업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 수행

라.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 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마.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2022년 3월말까지
-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 즉시